

#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 법률(안)

- Regulation of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-

2021.7.20.(화)

駐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

정명규 참사관(환경)

#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 법률 개괄

□ 명칭: Regulation of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

□ 본문: 11 chapter, 36 Article로 구성

\* ①주제·범위·정의, ②허가받은 신고자의 의무·권리, ③관할 당국, ④CBAM 배출권, ⑤제품의 국경 행정, ⑥집행, ⑦위임 행사와 위원회 절차, ⑧보고·평가, ⑨EU ETS의 무상할당과의 조율, ⑩과도 조항, ⑪최종 조항

□ 부칙

○ Annex I : CBAM 적용 대상 제품 및 온실가스

○ Annex II : Section A : CBAM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

Section B : 전기 수입과 관련하여 CBAM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

○ Annex III :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법

\* 1. 정의, 2. 단순제품에 실제로 직접 내포된 배출량, 3. 복합제품에 실제로 직접 내포된 배출량, 4.1. 전기 이외 제품의 기본값, 4.2. 전기의 기본값, 5. 전기에 실제 내포된 배출량을 적용하는 조건 등

○ Annex IV :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위한 기록 의무

○ Annex V : 검증 원칙 및 검증 보고서의 내용

#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 법률 세부 내용

## 제1장 주제 · 범위 · 정의 (Subject Matter, Scope, Definition)

### □ 제1조. 주제 (Subject matter)

- 동 규정은 탄소누출 리스크(Carbon Leakage)를 예방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을 다루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을 수립함 (2항)
- CBAM은 수입품에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동등한 규칙들(equivalent set of rules)을 적용함으로써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(ETS)를 보완함 (2항)

### □ 제2조. 범위 (Scope)

- 동 규정은 제3국으로부터 유래하는 Annex I 에 등재(list)된 제품\*에 대해 적용 (1항, 2항)

\* Annex I : 시멘트, 전기, 비료, 철/철강, 알루미늄

○ CBAM은 Annex II 에 등재(list)된 국가\*에는 적용하지 않음(3항)

\* Section A: 4개국(아이슬란드/리히텐슈타인/노르웨이/스위스) 및 외부영토(Ceuta, Melilla 등)

○ Annex II 리스트(Section A)는 일정 조건의 누적적 이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(5항)

- (a) ▲EU ETS가 제3국에 적용되거나 EU와 제3국간 협약을 체결함, ▲EU ETS와 제3국 배출권거래제(ETS)와 완전히 연계됨

- (b) 수입품이 유래하는 국가에서 해당 수입품에 지불한 가격이, 보조금 없이, EU ETS가 적용되는 제품보다 효과적으로 청구됨

○ EU집행위원회는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통해 Annex I 제품에 CBAM을 적용할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 (6항)

○ 제3국이 EU 내부 전기시장과 통합되어 있으나, 해당국가로부터 EU로의 전기수입에 대해 CBAM을 적용할 기술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, CBAM 적용이 면제됨(7항)

○ EU집행위원회는 위임법률(delegated act)을 통해 Annex II (Section A, Section B)의 리스트를 변경할 권한이 있음 (11항)

- EU는 제9조의 적용에서 제3국의 탄소가격제를 고려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(12항)

## □ 제3조. 정의 (Definitions)

- 제품(goods), 온실가스, 배출, 수입, EU ETS, 제3국, ..... 간접배출 등

## **제2장 허가받은 제품 신고인의 의무와 권리** **[Obligations and rights of authorized declarants of goods]**

## □ 제4조. 제품의 수입 (Importation of goods)

- 제17조에 따라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의해서만 제품이 수입됨

## □ 제5조. 허가의 신청 (Application of Authorization)

- 제2조에 규정된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누구든지 관할당국에 해당 제품의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(1항)

- 허가의 신청은 신청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(3항)
  - 이름/연락 정보/공인된 서명,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, EU에서의 주요 경제 활동, 수입품의 추정 화폐 가치 등
- EU집행위원회는 허가신청의 표준 포맷, 허가 신청 후 관할 당국의 절차 등에 대해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6항)

□ 제6조. CBAM 신고 (CBAM declaration)

- 허가받은 신고자는 매년 5월말까지 관할당국에 CBAM 신고서를 제출함 (1항)
- CBAM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함 (2항)
  - (a) 전년도에 수입한 제품 유형별 총량 (전기: MWh, 제품: ton)
  - (b) 전년도에 EU로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 (제7조에 따라 계산)
  - (c) 수입품에 내포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게 상쇄(surrender)한 CBAM 배출권의 수
    - ※ 제9조(원산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)에 따른 삭감(reduction)과 제31조(EU ETS의 무상할당과의 조율)에 따른 조정(adjustment)을 거친 CBAM 배출권의 수

- EU집행위원회는 표준 포맷, CBAM 신고서 제출 절차,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CBAM 배출권의 조정 등에 대한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(6항)

□ 제7조. 내포된 온실가스 계산 (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)

- 수입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Annex III에 설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됨 (1항)
- 전기 이외의 수입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Annex III 2.와 3.에서 설정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계산됨 (2항)
  -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될 수 없을 때,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Annex III 4.1에서 설정된 기본값(default value)을 참고하여 결정됨
- 수입된 전기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은, 허가받은 신고자가 Annex III 5에서 설정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한, Annex III 4.2에서 설정된 기본값(default value)을 참고하여 결정됨 (3항)
- 신고자는 Annex IV에 따라 수입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계속 기록함 (4항)

- EU집행위원회는 Annex III에 설정된 계산 방법의 요소에 대한 자세한 규칙에 대한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6항)

□ 제8조.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(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)

- 허가받은 신고자는 제6조에 따라 제출한 CBAM신고서에서 신고한 총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제18조에 따라 선임된 검증자에게 Annex V에 설정된 검증 원칙에 따라 검증받아야 함 (1항)
- EU집행위원회는 검증 원칙 등에 대한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3항)

□ 제9조. 원산지에서 지불된 탄소 가격 (Carbon price paid in the country of origin)

- 허가받은 신고자는 CBAM 신고 시 원산지(country of origin)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하여 상쇄(surrender)될 CBAM 배출권의 수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(1항)
- 허가받은 신고자는 신고한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기록하고, 수출 보조금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탄소 가격을 실제로 지불했다는 증거를 확보함 (2항)



- 허가받은 신고자는 CBAM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상기 정보를 계속 기록해야 함 (3항)
- EU집행위원회는 CBAM 배출권을 줄이는 계산에 대한 방법, 외국통화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유로화로 전환하는 방법, 지불한 탄소가격 및 수출보조금이 없었다는 증명 등에 대한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4항)
- 제10조. 제3국에서의 시설과 운영자의 등록 (Registration of operators and installations in the third countries)
  - EU집행위원회는 제3국에 위치한 시설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영자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14조에 따른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음 (1항)

## 제3장 관할 당국 (Competent Authorities)

□ 제11조. 관할 당국 (Competent Authority)

- 회원국은 동 규정의 의무를 이행할 관할당국을 지정하고, 이를 EU집행위원회에 통보(1항)

□ 제12조. EU집행위원회 (Commission)

- EU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의 임무 이행을 지원하고, 이들의 활동을 조율함

□ 제13조.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공개 (Professional secrec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)

- 관할당국이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모든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고,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관할당국이 공개할 수 없음

□ 제14조. 국가등록부와 중앙 데이터베이스 (National Registries and central database)

- 관할당국은 허가받은 신고자에 대한 국가 등록부(National Registry)(전자 표준 데이터 베이스 형태)를 설치함 (1항)

- 데이터베이스는 허가된 신고자에 대한 다음 정보를 갖는 계정을 포함 (2항)
  - (a)허가된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, (b)EORI 번호, (c)CBAM 계정 번호, (d)CBAM 배출권의 판매 가격, 구매 일자, 상쇄(surrender) 일자, 재구매 일자 등
- EU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시설과 운영자의 이름·주소·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함 (4항)

#### □ 제15조. 중앙 집행자 (Central Administrator)

- EU집행위원회는 CBAM 배출권의 구매, 보유, 상쇄, 재구매, 최소 등을 기록하는 독립적 거래로그(transaction log)를 유지하고, 국가등록부를 조율하는 중앙집행자로서 역할을 함 (1항)

#### □ 제16조. 국가등록부의 계정 (Account in national registry)

- 관할당국은 허가받은 신고자 각각에게 고유의 CBAM 계정 번호를 부여함 (1항)
- 신고자들은 국가 등록부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음 (2항)

- 관할당국은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하자마다 계정을 만들고, 이것을 신고자에게 통보(3항)
- 허가받은 신고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, 허가가 취소될 경우, 관할 당국은 해당 신고자에 대한 계정을 폐쇄함 (4항)

□ 제17조. 신청의 허가 (Authorization of application)

- 관할당국은 제5조에 따라 제품 수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허가함 (1항)
  - (a) 신청자가 최근 5년간 관세 법률, 조세 규칙, 시장 남용 규칙에 대한 심각한/반복되는 위반에 관여하지 않고, 경제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형사범 기록이 없을 것
  - (b) 동 규정상의 의무를 충족할 재정적·운영적 역량이 증명할 것
- 관할당국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취소함(9항)

□ 제18조. 검증자의 인가 (Accreditation of verifiers)

-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18/2067에 따라 인가된 사람은 동 규정하의 인가된 검증자로 간주됨 (1항)
- 국가 인증기관(national accreditation body)는 Annex V의 검증 원칙을 적용할 역량을 증명하는 문서를 검토한 후 검증인을 인가할 수 있음 (2항)
- EU집행위원회는 인가, 인가된 검증자에 대한 통제·감독을 위한 구체적 조건, 인가의 철회, 인증기관간 상호 인정과 동료 평가 등에 대한 위임법률(delegated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3항)

□ 제19조. CBAM 신고의 검토 (Review of CBAM declaration)

- CBAM 신고는 그것이 제출된 후 4년 이내에 관할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, 동 검토는 CBAM 신고 시 제출된 정보를 동 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당국과 교환된 정보와 기타 적절한 정보 등에 기반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구성됨 (1항)

- 허가받은 신고자가 제6조에 따른 CBAM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관할당국은 자신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CBAM 의무를 평가하고, CBAM 신고가 제출되어야 하는 해로부터 4년말까지 적절한 CBAM 배출권의 수를 계산함 (2항)
- 관할당국이 CBAM 신고에 따라 상쇄(surrender)될 CBAM 배출권이 부정확하다고 결정할 경우, CBAM 당국은 그 양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. 관할당국은 허가받은 신고자에게 조정된 CBAM 배출권의 양을 통보하면서 1년 이내에 추가된 CBAM 배출권을 상쇄(surrender)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(3항)
- CBAM배출권이 적절한 양을 초과하여 상쇄(surrender)된 경우에는 관할 당국이 초과된 CBAM 배출권을 보상할 수 있음 (5항)

## 제4장 CBAM 배출권 (CBAM Certificate)

- 제20조. CBAM 배출권의 판매 (Sale of CBAM certificates)

- 관할당국은 허가받은 신고자에게 제21조에서 정한 가격대로 CBAM 배출권을 판매함 (1항)
- 관할당국은 CBAM 배출권을 제작할 때 고유 단위 아이디 코드(unique unit identification code)가 할당되도록 하고, 그 CBAM 배출권을 구매하는 신고자의 계정에 고유 단위 아이디 번호, 해당 CBAM 배출권의 판매가격 및 판매일자를 등록함 (2항)

□ 제21조. CBAM 배출권의 가격 (Price of CBAM certificates)

- EU집행위원회는 CBAM 배출권의 가격을 EU ETS의 공동경매 플랫폼에서의 할당량 (allowance)의 매주당 최종시세(closing price)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함 (1항)
- EU집행위원회는 이 평균 가격을 다음주 첫째날 홈페이지에 발표하고, 그 다음날부터 다음다음주 첫째날까지 적용됨 (2항)
- EU집행위원회는 CBAM 배출권의 평균 가격을 정하는 방법, 동 가격의 발표에 대한 조정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정의하는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3항)

□ 제22조. CBAM 배출권의 제출 (Surrender of CBAM certificates)

- 허가받은 신고자는 매년 5월말까지 제6조 제항에 따라 전년도에 수입한 제품에 내포되었다고 신고하고, 제8조에 따라 검증을 받은 것에 상응하는 CBAM 배출권의 수를 관할당국에 제출(surrender)해야 함 (1항)
- 허가 받은 신고자는 요구되는 CBAM 배출권의 수가 5월말까지 국가등록부상 자신의 계정에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(제1항의) CBAM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함 (2항)

□ 제23조. CBAM 배출권의 재구매 (Re-purchase of CBAM certificates)

- 관할당국은, 허가받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, 국가등록부의 신고자의 계정에 남아 있는 CBAM 배출권의 초과량을 재구매할 수 있음. 재구매 요청은 매년 6월말까지 제출되어야 함 (1항)
- 재구매할 수 있는 양은 신고자가 전년도에 구입한 CBAM 배출권의 1/3로 제한됨(2항)
- 재구매 가격은 신고자가 배출권을 샀을 때 지불한 가격과 동일함 (3항)



□ 제24조. CBAM 배출권의 취소 (Cancellation of CBAM certificates)

- 관할 당국은 매년 6월말까지, 허가받은 신고자가 前前年에 구매하여 국가등록부의 계정에 남아 있는 배출권을 취소함

## 제5장    제품의 국경 행정(Border admisnitation of goods)

□ 제25조. 제품이 수입될 때 국경에서의 절차 (Procedures at border when goods are imported)

- 관세당국은 신청자가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, 제품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음 (1항)
- 관세당국은 신청자를 허가한 관할당국과 주기적으로 수입신청이 들어온 제품에 대한 정보\*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함 (2항)

\* EORI 번호, 신청인의 CBAM 계정 번호, 8자리 CN 코드, 수량, 원산지, 제품 신고자, 신청일, 관세절차 등

- EU집행위원회는 관세당국과 관할당국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세부 사항(정보,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)을 정의하는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3항)

## 제6장 집행 (Enforcement)

### □ 제26조. 벌칙 (Penalty)

- 허가받은 신고자가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에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배출권의 수를 제출(surrender)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과됨 (1항)
- 허가받은 신고자가 CBAM 배출권을 제출(surrender)하지 않아서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CBAM배출권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(3항)
- 관할당국은 허가받은 신고자가 제1항의 CBAM 배출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, 해당 신고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함 (4항)
  - (a) 관할당국은 해당 신고자가 CBAM 배출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림
  - (b)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
  - (c) 해당 신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규모

- (d)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
- (e) 해당신고자가 CBAM 제출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
- (f) 해당신고자가 동 결정에 대해 각국의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

#### □ 제27조. 회피 (Circumvention)

- EU집행위원회는 적절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동 규정을 회피하는 관행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 (1항)
- 회피를 위한 관행은 동 규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관련된 무역 패턴이 동 규정상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 말고는 적절한 명분 또는 경제적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고, 해당 제품을 동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약간 변형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의 상황을 포함 (2항)
- 제2항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회원국 또는 이행관계자는, 전년도의 동 기간과 비교하여 2개월 이상 동 규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,

동 규정의 Annex I 에 포함되지 않는 약간 변형된 제품의 수입규모가 증가할 경우, EU집행위원회에 이것을 알릴 수 있음. EU집행위원회는 제품과 약간 변형된 제품의 무역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함 (3항)

-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서 회피에 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, EU집행위원회는 회피의 목적으로 약간 변형된 제품을 포함시키기 위해 동 규정의 범위를 보완하는 위임법률(delegated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5항)

## **제7장**      **위임의 행사와 위원회 절차** **[Exercise of delegation and committee procedure]**

### **□ 제28조. 위임의 행사 (Exercise of delegation)**

- 위임법률(delegated act)을 채택할 권한은 동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EU집행 위원회에 부여됨 (1항)

- 제2조(10), 제2조(11), 제18조(3), 제27조(5)에 규정된 위임법률(delegated act)을 채택할 권한은 당분간(indeterminate period of time) EU집행위원회에게 부여되나,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 (2항, 3항)
  - EU집행위원회는 위임법률(delegated act)을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와 협의해야 함 (5항)
  - EU집행위원회는 위임법률(delegated act)을 채택하자마자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동시에 통보해야함 (6항)
  - 위임법률(delegated act)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됨 (7항)
- 제29조 EU집행위원회의 이행권한 행사 (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 by the Commission)
- EU집행위원회는 CBAM 위원회(Regulation (EU)182/2011 상의 위원회)의 조력을 받음(1항)

## 제8장 보고와 평가(Reporting and review)

### □ 제30조. 보고와 평가 (Reporting and review)

○ EU집행위원회는 동 규정의 범위를 간접배출(indirect emission)과 Annex I 리스트 이외의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, 환경 발자국 방법에 기반하는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방법을 개발함 (1항)

○ EU집행위원회는 과도기간(transitional period)이 끝나기 전에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동 규정의 적용을 평가한 보고서\*를 제출함 (2항)

\* 동 규정의 범위를 ▲간접적 배출(indirect emission), ▲Annex I 리스트 이외의 제품, ▲수송 서비스, ▲미래에 탄소누출을 직면할 수 있는 가치체인상의 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

○ 동 보고서는, 필요 시, 법률 제안을 수반할 수 있음 (3항)

## 제9장

### EU ETS의 무상할당과의 조율

#### [Coordination with 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EU ETS]

- 제31조. EU ETS하의 배출권 무상할당과 CBAM 배출권 제출 의무 (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EU ETS and obligation to surrender CBAM certificates)
  - 허가받은 신고자가 제22조에 따라 제출(surrender)해야 하는 CBAM 배출권은 EU ETS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할당량(allowance)의 범위를 고려하여 조정됨 (1항)
  - EU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축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2항)

## 제10장

### 과도 기간 (Transitional period)

- 제32조. 범위 (Scope)
  - 과도기간 동안 CBAM은 제33조에서 제35조에 따른 보고 의무로 적용됨

□ 제33조. 제품의 수입 (Importation of goods)

○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(1항)

○ 관세당국은 신고자에게 1항의 의무를 통지함 (2항)

○ 관세당국은 회원국과 수입품의 수입 정보\*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함 (3항)

\* 역외가공절차에 따른 가공품, 신고자의 EORI 번호, 8자리 CN 코드, 수량, 원산지, 제품 신고자, 신청일, 관세절차 등

□ 제34조 특정 통관 절차에 대한 보고 의무 (Reporting obligation for certain customs procedures)

○ 역내가공절차(inward processing procedure)의 결과로 나오는 가공품(processed product)의 경우, 제33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, 그 가공품이 Annex I 에 해당하지 않아도, 역내 가공절차(inward processing procedure) 하에 놓여진 Annex I 리스트상의 제품에 적용됨 (1항)

○ 보고 의무는 (a)역외가공절차(outward processing procedure)의 결과로 나오는 가공품(processed product)과 (b)반송품(returned product)에는 적용되지 않음 (2항)



□ 제35조. 보고 의무 (Reporting obligation)

- 신고자는 분기별로 수입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분기별 보고서(CBAM 보고서)를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함 (1항)
  
- CBAM 보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(2항)
  - (a) 수입한 제품 유형별 총량 (전기: MWh, 제품: ton)
  - (b)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실제 총 온실가스 배출량 (Annex III에 따라 계산)
  - (c)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실제 총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 (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 (implementing act)에서 정한 방법론에 따라 계산)
  - (d) 수입품에 내포된 배출량에 대한 원산국에서의 적정 탄소가격 (수출보조금 또는 다른 형태의 수출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함)
  
- 관할당국은 보고서의 대상 기간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의 정보에 대해 EU집행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함 (3항)

- 관할당국은 CBAM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 (4항)
- 관할당국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, 해당 신고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함 (5항)
  - (a) 관할당국은 신고자가 해당 분기의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림
  - (b)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
  - (c) 해당 신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규모
  - (d)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
  - (e) 해당신고자가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
  - (f) 해당신고자가 동 결정에 대해 각국의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
- EU집행위원회는 ▲보고할 정보, 관할당국과 EU집행위원회간 커뮤니케이션의 절차, 외환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을 유로로 환전하는 방법 등, ▲Annex III에 설정된 계산 방법의 필요 요소 등, ▲수입품에 내포된 간접적 배출에 대한 계산 방법 등에 대한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(6항)

## 제11장 최종 조항 (Final Provision)

### □ 제36조. 최종 조항 (Final Provision)

- 동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후 발효됨 (1항)
- 동 규정은 2023년1월부터 적용됨 (2항)
- 제2항에는 예외가 있음 (3항)
  - 제32조부터 제34조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
  - 제35조는 2026년 2월28일까지 적용
  - 제5조와 제17조는 2025년 9월1일부터 적용
  -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31조는 2026년 1월부터 적용

## 향후 고려 사항 등

□ CBAM이 적용되는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발생할 의무

○ (과도기간: 2023년 1월~2025년 12월) CBAM 보고서 제출(제35조)

○ (2026년 1월~) 수입허가, CBAM 배출권 구매, CBAM 신고, CBAM 배출권 제출 등

□ 향후 입법 과정/절차

○ ①EU집행위원회의 법률(안) 제안 → ②유럽의회 심의 → ③각료이사회 심의 → ④기관간(유럽의회, 각료이사회, 집행위원회) 협의 및 합의 → ⑤관보게시 및 발효

○ CBAM 법률(Regulation)(안)이 7월14일에 제안된 내용대로 입법 과정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수정/변경/보완될 것인지.....(내용, 시기 등)

- CBAM의 WTO 부합성 논란, 회원국간 입장 차이, 미국/중국 등의 반발, 산업계VS 환경단체, EU집행위원회 내부 조율, 차기 EU 리더십 출범(2024년말~2029년말) 출범 등

## □ EU집행위원회 준비 동향

### ○ 중요 사항을 이행법률(implementing act)\*과 위임법(delegated act)\*\*에서 결정

\* 허가 신청(제5조), CBAM 신고(제6조),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방법의 요소에 대한 규칙(제7조), 검증 원칙(제8조), **원산지 지불 탄소가격 관련 세부 사항(제9조)**, CBAM 배출권 가격 설정(제21조), 관할 당국과 관세당국간 커뮤니케이션(제25조), **관할당국에 제출해야하는 CBAM 배출권을 EU ETS 무상할당을 고려하여 조정 (제31조)**, **과도기간 중 보고의무(제35조)**

\*\* Annex II 리스트 변경(제2조), 검증자의 인가(제18조),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동 규정 범위 보완(제27조)